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853-01

2019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업무 매뉴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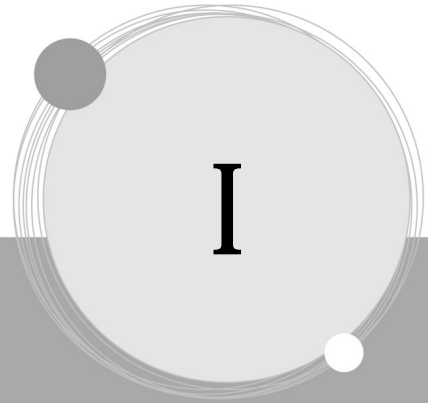
이 매뉴얼은 2019.05.01.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업무 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준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따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적용받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3
2. 기존 입찰 및 계약제도 문제점 분석	3
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향	4
4. 주요 진행경과	4
I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주요 제·개정 내용 ..	7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주요 개정내용	9
2.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주요 제정내용	12
III.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적용 대상	13
1.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15
2. 입찰공고	22
IV.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주요내용	37
1. 입찰등급 및 입찰방식	39
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	44
3. 균형가격	50
4. 증명서 발급	52

5.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55
6. 세부심사방법	56
가. 수리이행능력	56
나. 경영상태	70
다. 경제성	72
라. 결격사유	74
마. 문화재수리계획	75
7. 공동수급체 심사	77
V.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주요내용	81
1. 적용대상	83
2.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서의 구성 비목	84
3. 자문수당	85
4. 문화재수리원가	86
V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관련 FAQ	97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관련 FAQ	99
2.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관련 FAQ	125
붙임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27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45
3. 별표 및 별지 서식(문화재수리 종합심사 기준)	161
4.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215
5.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	231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일반 건설공사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를 문화재수리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실 문화재수리의 단초 제공
 - *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낙찰하한가에 근접한 투찰자가 낙찰
- 공기에측이 가능한 신축 중심의 '공사원가계산'은 원형고증을 위한 자문회의, 잦은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등 문화재수리의 특수성 미반영
-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입찰 및 계약제도 마련으로 문화재수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

2. 기존 입찰 및 계약제도 문제점 분석

- 기존 낙찰자 결정 체계는 건설공사와 유사하게 가격경쟁을 기반으로 한 적격심사제 적용
- 문화재수리 50억 원 미만 공사 시 입찰가격 70~90%, 수행능력 10~30%로 평가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억 원 미만의 수리건은 입찰가격이 평가를 좌우하게 되어 기술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전제로 효율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공사와는 달리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전통 재료를 이용하여 전통기법으로 시공하여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인 문화재수리의 특성이 '공사원가계산기준'에는 미반영

3.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방향

-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도입
 - 기존 가격경쟁 위주의 입찰에서 기술력 중심의 입찰로 전환
 - 규모·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3등급으로 구분
 - 등급을 고려한 평가방법 차등화
- 유지관리 중심의 문화재수리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원가계산기준 마련
 - '공무원가계산기준' 체계를 준용하면서 고유의 원가계산기준 마련
 - 자문회의, 수리보고서, 해체부재 실측조사, 현장공개 등 문화재수리 고유비용 반영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 현실화
(단, 계약법령 상 일반관리비 등 상한율 등 기존 규정 준수)

4. 주요 진행경과

- '14.04월~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구성 및 운영
 - * 구성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협회, 관계전문가 등
- '15년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제정을 위한 법령 정비
 -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4항(기획재정부, '15.12.31 개정)
 -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3제1항(행정자치부, '15.08.19 개정)
- '16.09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심사기준 제정('16.09.21 시행)
 - * (국가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16.09.19)
 -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16.09.21)
- '16.05~'16.12월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마련 연구 시행
- '16.09~'17.12월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연구 시행
 - * '16.09월 2016년도 시범사업 15건 고시 / '17년 2017년도 시범사업 46건 고시
 - * 시범사업 발주자 대상 설명회 2회('16.10.06/'17.03.14), 지역별 설명회 16회('16년 10회, '17년 6회)

- '17.07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심사기준 일부개정('17.07.10 시행)
 - * 모니터링 중간결과 반영

- '18.12월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19.02.01 시행)
 - * 2019.02.01. 이후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19.03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심사기준 일부개정('19.05.01 시행)
 - * (국가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204호, '19.03.29)
 - * (지방계약법 관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7호, '19.04.25)



I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주요 제·개정 내용

Ⅱ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주요 제·개정 내용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사유

-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급간 조정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균형가격 평가기준 급간 조정 등
- 시범사업 기간 중 접수 민원 반영
* 서류발급 편의성 향상, 실적증명서 발급 시 감독관(감독부서) 경유란 추가 등
-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T/F 회의 결과 반영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명확화 및 계획서 작성기준 구체화 등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에 수리협회 추가

나. 주요 개정내용

- [제2조] 복합업종에서의 시공비율 정의 명확화
(신설) 복합업종의 경우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
- [제6조]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적용 근거 마련
(기존) 공사원가계산 규정 준용
(개정)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 적용
- [제7조] 입찰공고 시 타 문화재수리 현장 중복배치 승낙여부 명기 의무 신설
(신설) 입찰공고 시 배치기술자를 문화재수리법령에 따라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여부 명기

- **[제8조]**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생략규정 보완
(신설)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생략 가능
- **[제12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선정기준 신설
(신설)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 37점 이상 및 상위 5위 이내인 입찰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한정
- **[제14조]** 신설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평가점수 산정 우대
(기존) 공동수급체 수리업경력 심사 시 평가점수 산정 우대 기준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 30% 이상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개정) 공동수급체 수리업경력 심사 시 평가점수 산정 우대 기준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 30% 이상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 **[제27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시 의견청취 기회 부여
(신설) 심사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권한 부여
- **[별표 5]** 수리실적 평가기준 조정
(기존) 문화재수리 실적이 입찰건 추정가격의 300% 이상 시 만점
(개정) 문화재수리 실적이 입찰건 추정가격의 200% 이상 시 만점
- **[별표 5]**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조정
(기존) 환산건수 5건 이상 만점, 4건 미만 최하점
6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 평가점수의 80% 인정
(개정) 환산건수 3건 이상 만점, 1건 미만 최하점
6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 환산건수의 80%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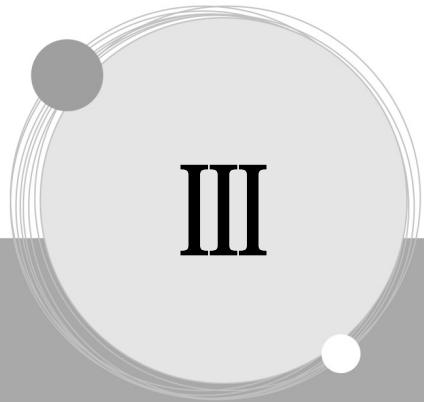
- [별표 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 급간 조정
 - (기존) 평가점수 급간 0.5점
 - (개정) 평가점수 급간 0.25점
- [별표 5] 수리업경력 평가기준 조정
 - (기존) 수리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만점
 - (개정) 수리업 영위기간 7년 이상 만점
- [별표 5] 신인도(영업정지 처분) 평가방법 조정
 - (기존) 발주자가 해당 수리업자의 등록권자에 공문으로 확인
 - (개정) 입찰자가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제출
 - * (별지 제6호의2 서식)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신설
- [별표 5] 신인도(안전관리) 평가기준 조정
 - (기존) 입찰공고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재해율
 - (개정) 입찰공고 년도의 최근 3년간 재해율
 - 입찰공고 시 평가기준 재해율 명기
- [별표 5] 신인도(공동수급체 구성) 신설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평가점수 산정 우대
 - (기존) 공동수급체 수리업경력 심사 시 평가점수 산정 우대 기준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 30% 이상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개정) 공동수급체 수리업경력 심사 시 평가점수 산정 우대 기준
 -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 30% 이상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 [별표 5] 신인도(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대상 기술자 정의 조정
 - (기존) 입찰자 소속 기술자 대상 심사

(개정)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 대상 심사

- **[별표 7] 경제성심사 평가기준 및 평가점수 급간 조정**
(기존) 평가기준 급간 1%, 평가점수 급간 1.25~1.75%(1등급 기준)
(개정) 평가기준 급간 0.14%, 평가점수 급간 1.00~1.25%(1등급 기준)
- **[별표 10]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 '관련 협회' 추가**
(기존)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발급기관 : 발주기관
(개정)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발급기관 : 발주기관, 관련 협회
-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수리금액 단위 조정**
(기존) 수리금액 단위 '원'
(개정) 수리금액 단위 '천원'
-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신설**
(신설) 문화재수리 계획서 서식에 분량, 편집방법, 표지 등을 규정한 작성요령 추가

2.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주요 제정내용

- 문화재수리 고유비용 반영
 - 관계전문가 자문수당 반영. 단, 사후정산 조건
 - 문화재수리보고서 작성비용 및 해체부재 실측조사비용 반영
 - 문서분석, 연륜연대 측정 등 과학적분석비 반영
 - 내부 유물 이전·보관을 위한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반영
 -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비용 반영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비용 현실화
 -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마련 연구용역(2016) 결과 반영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적용 대상

Ⅲ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적용 대상

1. 적용 대상 문화재수리

가. 2018년 이후 적용대상 문화재수리(문화재청 고시 제2018-123호, 2018.09.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 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문화재수리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 추정가격 7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의 문화재수리

- 그 외의 문화재수리로서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문화재수리

- (시행일) 2018.01.25.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
- (경과규정) 이 고시 적용일 이전에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문화재수리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나. 시범사업(2016~17) 대상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 2016년도 고시 사업(3건)

문화재청 고시 제2016-84호 2016.09.27.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종로구	사적 123	창경궁	창경궁 화장실 건립
2	서울	종로구	사적 121	사직단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3	서울	종로구	사적 122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등 종합정비

○ 2017년도 고시 사업(6건)

문화재청 고시 제2017-5호 2017.01.10. / 22호 2017.02.14.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경기	여주시	사적 195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영·영릉유적 종합정비공사(2단계)
2	서울	종로구	사적 123	창경궁	북동측 외곽담장 등 시설물 보수
3	서울	종로구	사적 121	사직단	사직단 관리사무소 건립(1차)
4	경기	구리시	사적 193	구리 동구릉	구리 동구릉(송릉) 연지 정비
5	경기	화성시	사적 206	화성 용릉과 건릉	용건릉 진입부 정비
6	충남	아산시	사적 155	아산 이충무공유허	현충사 경내 유적정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목록]

○ 2016년도 고시 사업(12건)

문화재청 고시 제2016-85호 2016.09.27.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	사적 162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2	부산	금정구	사적 215	금정산성	서문 성곽 해체 및 보수
3	경기	포천시	사적 403	포천 반월성	성곽보수
4	전남	나주시	사적 483	나주목 관아와 향교	발굴지 정비
5	서울	종로구	사적 143	서울 문묘와 성균관	향문복원 계단설치, 담장 및 협문 등 보수
6	강원	원주시	사적 447	원주 영원산성	성곽복원
7	충남	부여군	사적 58	부여 나성	유구정비
8	충남	아산시	중민 233	아산 건재고택	고택 보수
9	전북	남원시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적목당 복원
10	전북	전주시	보물 583	전주 풍패지관	서익현 드잡이 보수 및 정비
11	울산	중구	사적 320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12	제주	서귀포 시	중민 188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 2017년도 고시 사업(40건)

문화재청 고시 제2017-23호 2017.02.14./97호 2017.08.14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	서울	송파구	사적 297	서울 몽촌토성	탐방로 정비
2	서울	종로구	보물 142	서울 동관왕묘	화계정비, 배수로 정비
3	서울	-	사적 10	서울 한양도성	숙정문 문루, 창의문 협문 보수
4	서울	-	사적 10	서울 한양도성	성벽붕괴구간 보수
5	부산	금정구	사적 215	금정산성	탐방로 정비
6	인천	강화군	사적 225	강화 초지진	성곽보수
7	인천	강화군	사적 452	강화 외성	육축 복원
8	경기	광주시	사적 57	남한산성	승렬전 해체보수
9	경기	파주시	사적 323	파주 윤관장군묘	재실 및 외삼문 보수
10	강원	동해시	보물 1292	동해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적광전 해체보수
11	강원	영월군	사적 446	영월 정양산성	북문지 보수정비
12	충북	증평군	사적 527	증평 추성산성	탐방로 정비
13	충북	청주시	사적 212	청주 상당산성	수문 및 성곽발굴지 정비
14	충남	공주시	사적 12	공주 공산성	관람환경조성 및 주변정비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15	충남	공주시	사적 387	공주 우금치 전적	위령탑 보수 및 주변정비
16	충남	보령시	사적 501	보령 충청수영성	동문루 복원 및 성벽정비
17	충남	서산시	사적 116	서산 해미읍성	성곽보수
18	충남	홍성군	사적 231	홍성 홍주읍성	수구유적 정비, 복문 복원
19	전북	고창군	사적 145	고창읍성	동문육축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20	전남	나주시	사적 337	나주읍성	서성벽 정비, 서수구문원 복원
21	경북	경주시	보물 442	경주 양동 관가정	관가정 해체보수
22	경북	경주시	사적 47	경주 명활성	북문지 성곽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
23	경북	경주시	사적 16	경주 월성	해자 복원
24	경북	경주시	사적 18	경주 동궁과 월지	침전권역 복원(서편 건물지 복원)
25	경북	경주시	사적 512	경주 대릉원 일원	금관총 복원
26	경북	경주시	사적 6	경주 황룡사지	담장정비
27	경북	고령군	사적 79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분 정비 및 주변정비
28	경북	문경시	사적 147	문경 조령 관문	성벽 보수
29	경북	성주군	보물 1575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만화루 복원, 수복사 이건
30	경북	청송군	보물 1840	청송 보광사 극락전	선방건립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31	경남	창녕군	사적 51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고분 복원
32	경남	창원시	보물 1729	창원 성주사 목조석기여래삼불좌상	범종루 건립
33	경남	하동군	사적 453	하동읍성	용지 보수 및 성곽정비
34	경남	함안군	사적 515	함안 말이산 고분군	고분 복원정비
35	경남	함양군	보물 1691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극락보존 보수
36	경남	-	사적 113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제승당 등 13동 단청
37	제주	서귀포시	천기 443	제주중문·대포해 안주상절리대	관람데크시설 정비
38	제주	제주시	사적 380	제주목 관아	목관아 단청 및 바닥정비
39	제주	제주시	사적 134	제주 삼성혈	담장보수
40	경기	파주시	사적 537	덕진산성	성벽보수, 집수지 재현, 탐방로 정비

다. 유의사항

- 2016~17년도에 고시한 사업도 ‘문화재청 고시 제2018-123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2. 입찰공고

가. 입찰공고 전 결정사항

- 입찰등급 결정([별표 1]관련 / P.00 참고)
 - 해당 문화재수리의 중요도, 난이도 및 복잡성, 규모에 따라 결정
 - 문화재 중요도 : 수리 대상이 지정문화재인지 주변정비인지에 따라 구분
 - * 국가지정, 시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세분화
 - 난이도 및 복잡성 : 표준품셈 기준 내역서 상 공종수에 따라 구분
 - * 공종 수 산정 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의 가설공사 제외, 조경공사 포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분 중 가설공사, 기타잡공사 제외
 - 수리규모 : 해당 문화재수리의 추정가격에 따라 구분
 -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문화재수리만을 심사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입찰등급 산정은 전체 문화재수리의 내용으로 결정
- 입찰등급에 따른 평가방법 결정
 - 입찰등급 1등급의 경우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한 경우 : [별표 3-2]에 따라 평가
 -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 해당 입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판단 입찰등급 1등급 중 '계약심사위원회' 심의 필요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별표 3-1]에 따라 평가
 - 입찰등급 2등급의 경우 : [별표 4]에 따라 평가
- 수리코드 결정
 - 1단계. 해당 문화재수리가 지정문화재수리인지 주변정비인지 구분
 - 2단계. 대분류와 중분류 결정
 - * 지정종목(국보, 보물, 사적 등)과 관계없이 수리의 내용으로 구분
 - 3단계. 수리의 내용이 복합된 경우
 - 복합구조의 경우 주구조(기둥, 보 등)로 구분
 - 복합공종의 경우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구분

- 추정가격 50억 이상은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 조정여부 결정(별표 5관련)
 - 입찰공고에 명기하여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하향 가능
 -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 해당 추정가격의 70% 하향 적용 가능. 단, 50억 미만인 경우는 50억

- 복합업종의 경우 평가대상 결정(제13조 관련)
 - 하나의 문화재수리가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
 -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공고, 평가하는 것이 원칙. 단,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가격 기준)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공고, 평가 가능
 - * 시공비율(제2조 제8호) :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단,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 산정
 - 복합업종으로 심사 시 :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에 따라 평가
 - * **주의사항!**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각 업종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
 - 단일업종으로 심사 시 :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평가
 - * **주의사항!** 신인도(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심사대상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인정.

나. 입찰공고문 예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 2019.05월 이전 입찰공고문으로 개정내용 반영하여 변경 필요!!!

- 수 리 명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2019년 발주)
- 수리구분 : 국가지정문화재수리(사적 제124호 덕수궁)
- 수리현장 : 서울특별시
- 추정가격 : 71.5억(보수단청업 87.63%, 조경업 2.28%, 보존과학업 10.09%)

⇒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제외)

수리코드 112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50.0억

복합업종 문화재수리이나 보수단청업만 평가

1. 공사 개요

- 1.1. 관리번호 : 1901006-00
- 1.2. 수요기관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1.3. 공 사 명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1차)
-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10일
 -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1.6. 공사내용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517.41㎡
- 1.7. 추정금액 : 9,070,703,000원 (추정가격 : 7,153,570,000원 + 부가가치세 : 715,357,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1,201,776,00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248,869,000원
-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8,097,445,000원 (89.27%)	6,895,669,000원 (87.63%)
전문문화재수리업 (조경업)	179,223,000원 (1.98%)	179,223,000원 (2.28%)
전문문화재수리업 (보존과학업)	794,035,000원 (8.75%)	794,035,000원 (10.09%)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심사 관련 내용만 발췌

1. 공사 개요

- 1.1. 관리번호 : 1901006-00
- 1.2. 수요기관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1.3. 공 사 명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1차)
- 1.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10일
 -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1.6. 공사내용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2,517.41㎡
- 1.7. 추정금액 : 9,070,703,000원 (추정가격 : 7,153,570,000원 + 부가가치세 : 715,357,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1,201,776,000원)
 -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248,869,000원
-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종합문화재수리업 (보수단청업)	8,097,445,000원 (89.27%)	6,895,669,000원 (87.63%)
전문문화재수리업 (조경업)	179,223,000원 (1.98%)	179,223,000원 (2.28%)
전문문화재수리업 (보존과학업)	794,035,000원 (8.75%)	794,035,000원 (10.09%)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대상 입찰
건임을 명기

* 둘 이상의 문화재
수리업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종을 명기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문화재청 고시) 대상공사입니다.
 - 2.1.1. 종합심사 기준은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심사기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1.2. 이 공사의 종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입니다.
-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2.3. 일반경쟁(전국) 대상공사입니다.
- 2.4.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참고]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업이 필요한 경우
모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 시
주된 업종만 평가
가능(제13조)

[2019년 개정사항]

- 입찰 공고 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된 기술자를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여부 명기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심사 관련 내용만 발췌

8.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8.1.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8.1.1. 제출방법 : 8.1.2.제출기한까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8.1.1.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수리 이행능력 심사에서 제외함)

8.1.1.2.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및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스캔첨부)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8.1.1.3. 제출방법 : 반드시 나라장터(공사-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신청서작성)를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1.1.4. 그 외 서류는 8.1.4의 우편송달처에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8.1.2. 제출기한 : 2019. 5. 22. 18:00

8.1.3. 제출서류

- ①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 ②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 ③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 ④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 ⑤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8.1.4. 우편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8.1.5.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現 나라장터(G2B) 시스템 상 증빙자료 파일 첨부가 불가능하여 서류로 제출받아야 하므로 제출방법 및 기한 등 명기

[2019년 개정사항]

- 제출서류에 '영업정지 처분확인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추가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심사 관련 내용만 발췌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문화재 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
[별표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1. 수리 이행능력 심사

1.1 수리실적 심사

1.1.1 본 공사의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5,000,000,000원
입니다.

1.1.2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평가대상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으로 입찰자가 3.3.3에 따라 제출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로 심사합니다.

1.1.3 실적심사는 종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만 심사하며, 입찰
자는 실적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2.1 배치기술자 능력 심사

1.2.1.1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문화재 수리코드는 112, 212입니다.

※ 타 업종과 공동등급을 하거나 하등급을 한 경우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

1.2.2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

1.2.2.1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입찰등급에 해당
하는 심사기준 명기

*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추정
가격 명시

[참고]

추정가격 50억 이
상인 경우 70%까
지 평가를 위한 추
정가격 하향 가능.
단, 조정금액이 50
억 미만인 경우는
50억 적용

*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수리
코드 명기

[참고]

동일 문화재수리 :
수리코드 3자리 중
뒤 두자리(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
찰공고서 상의 수
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심사 관련 내용만 발췌

1.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3.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3.3.3에 따라 발급·제출한 [별첨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1.3.2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는 보수단청업에 해당하는 기술자(기능자)로만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술자(기능자)만 평가대상이 됨을 명기

1.4 신인도 심사

1.4.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1.4.1.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기준이 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입니다.

1.4.1.2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문화재 수리코드는 112, 212입니다.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를 위한 지역 명기

*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수리 코드 명기

1.4.2 안전관리 심사

1.4.2.1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2017년, 2016년, 2015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합니다.

1.4.2.2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0.528)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이 되는 '최근 3년간' 재해율 제시 필요

*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명기

2. 경영상태 심사

2.1 경영상태 심사에 적용되는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은 62.06%이며, 평균유동비율은 259.55%입니다.

2.2 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17년도말 기준 정기결산서' 자료로 평가합니다.

[2019년 개정사항]

- 별지 제6호 서식이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회사명 명기 시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를 명기토록 보완
- 안전관리 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최근 3개년도 재해율로 변경. 입찰공고 시 최근 3년간의 재해율 명기 의무화

< 덕수궁 돈덕전 재건 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심사 관련 내용만 발췌

3. 기타 유의사항

3.1 입찰자는 문화재 수리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문화재 수리 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조달청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통보된 경우 통보된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 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 분	감 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문화재 수리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3.3.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3.3.1 입찰자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를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심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3.2. 입찰자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및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증명서(별지 제3호)'를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3.3.3.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심사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종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

1.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2.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3.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4. '심사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5.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원본 제출)

* 입찰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투입 계획 또는 문화재 수리계획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명기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방법 명기

* 제출서류 명기

[2019년 개정사항]

- 제출서류에 '영업정지 처분확인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추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 2019.05월 이전 입찰공고문으로 개정내용 반영하여 변경 필요!!!

- 수 리 명 : 천림산 봉수지 복원정비 공사(2018년 발주)
- 수리구분 : 시도지정문화재수리(시도기념물 제179호 천림산봉수지)
- 수리현장 : 경기도
- 추정가격 : 11.3억(보수단청업 100%)

⇒ 입찰등급 2등급

수리코드 121

1. 공사 개요

- 1.1. 관리번호 : 1801588-00
- 1.2.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1.3. 공 사 명 : 천림산봉수지 복원정비 공사
- 1.4.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번지 일원
-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70일
- 1.6. 공사내용 : 공통가설공사, 탐방로 정비공사, 봉수지 정비공사, 건물지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등
- 1.7. 추정금액 : 1,248,300,000원(추정가격 : 1,134,818,182원 + 부가가치세 113,481,818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 1.8. 업종별 추정금액
 -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 1,248,300,000원(100.00%)
-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 1,248,300,000원(100.00%)

< 천립산 봉수지 복원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1. 공사 개요

- 1.1. 관리번호 : 1801588-00
- 1.2.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1.3. 공 사 명 : 천립산봉수지 복원정비 공사
- 1.4.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35-5번지 일원
-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70일
- 1.6. 공사내용 : 공통가설공사, 탐방로 정비공사, 봉수지 정비공사, 건물지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등
- 1.7. 추정금액 : 1,248,300,000원(추정가격 : 1,134,818,182원 + 부가가치세 113,481,818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액 : 0원
- 1.8. 업종별 추정금액
 -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 1,248,300,000원(100.00%)
-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 1,248,300,000원(1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2.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입니다.
 - 2.1.1. 종합평가 기준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 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결정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1.2. 이 공사의 종합평가대상 업종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입니다.
-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2.3. 일반경쟁 대상공사입니다.
-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대상 입찰 건임을 명기

[2019년 개정사항]

- 입찰 공고 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된 기술자를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여부 명기

< 천림산 봉수지 복원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8.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8.1.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

8.1.1. 제출방법 : 8.1.2.제출기한까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8.1.1.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8.1.1.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증명서(별지 제3호)'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제출 하여야 합니다.

8.1.1.3. 그 외 서류는 8.1.4의 우편송달처에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합니다.

8.1.2. 제출기한 : 2018. 5. 17. 18:00

8.1.3. 제출서류

- ①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 ②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 ③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 ④ '결정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 ⑤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8.1.4. 우편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8.1.5. 종합평가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 現 나라장터(G2B) 시스템 상 증빙자료 파일 첨부가 불가능하여 서류로 제출받아야 하므로 제출방법 및 기한 등 명기

[2019년 개정사항]

- 제출서류에 '영업정지 처분확인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추가

< 천림산 봉수지 복원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자 결정기준

-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이하 '결정기준' 이라 함) [별표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1,134,818,182원입니다.

1. 수리 이행능력 심사

1.1 수리실적 심사

- 1.1.1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은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실적으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실적으로 심사합니다.
- 1.1.2 실적심사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만 심사하며,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1.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2.1 배치기술자 능력 심사

- 1.2.1.1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문화재 수리코드는 121, 221입니다.
 - ※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

1.2.2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

- 1.2.2.1 배치기능자 능력 심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입찰등급에 해당하는 심사기준 명기
*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추정 가격 명시

[참고]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경우 70%까지 평가를 위한 추정가격 하향 가능. 단, 조정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는 50억 적용

*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수리 코드 명기

[참고]

동일 문화재수리 : 수리코드 3자리 중 뒤 두자리(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

< 천림산 봉수지 복원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1.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3.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별첨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의 업종(보수단청업)에 따라 발급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신인도 심사

1.4.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1.4.1.1 결정기준이 되는 지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입니다.

1.4.1.2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문화재 수리코드는 121, 221입니다.

1.4.2 안전관리 심사

1.4.2.1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2016년, 2015년, 2014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합니다.

1.4.2.2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0.528)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심사

2.1 경영상태 심사에 적용되는 '16년도말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전문직별 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은 48.71%이며, 평균유동비율은 218.72%입니다.

2.2 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16년도말 기준 정기결산서 자료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에 속하는 기술자(기능자)만 평가대상이 됨을 명기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를 위한 지역 명기

*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수리코드 명기

* 평가대상이 되는 '최근 3년간' 재해율 제시 필요

*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명기

[2019년 개정사항]

- 별지 제6호 서식이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회사명 명기 시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를 명기토록 보완
- 안전관리 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최근 3개년 도 재해율로 변경. 입찰공고 시 최근 3년간의 재해율 명기 의무화

< 천림산 봉수지 복원공사 입찰공고문 >

* 종합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3. 기타 유의사항

3.1 입찰자는 문화재 수리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결정기준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2 낙찰자는 종합평가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문화재 수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화재청이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합니다.

구분	감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문화재 수리계획 위반	매 건당 1.0점

* 입찰 시 제출한 배치 기술자 투입 계획 또는 문화재 수리계획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 명기

3.3.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3.3.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송신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3.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증명서(별지 제3호)'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신청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직접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방법 명기

3.3.3. 동 심사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평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종합평가(수리이행능력심사 및 경영상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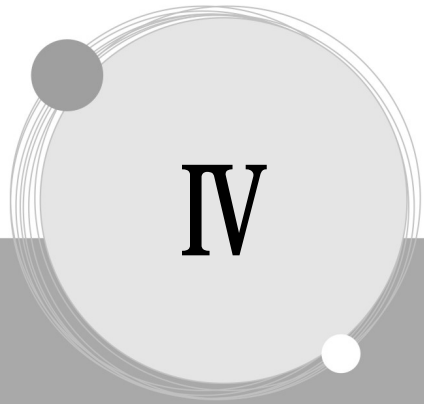
□ 제출서류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4. '결정기준' 제8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서류
5. 문화재수리실적 증명서 등 각종 증빙자료는 공문과 함께 원본 제출

* 제출서류 명기

[2019년 개정사항]

- 제출서류에 '영업정지 처분확인서(별지 제6호의2 서식)' 추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주요내용

IV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주요내용

1. 입찰등급 및 입찰방식(제4조 및 제5조, 별표 1)

가. 입찰등급

- 입찰등급 : 입찰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
- 해당 문화재수리의 중요도·난이도 및 복잡성·수리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중요도** : 수리 대상을 국가지정·시도지정·주변정비 등으로 구분
 - * 주변정비는 해당문화재수리보다 중요도 등급이 한단계 하향되어 있으니 주의
 - **난이도 및 복잡성**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혹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분을 기준으로 작성한 내역서 상의 공종수로 구분
 - * 공종수 산정 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기준으로 가설공사는 제외! 조경공사는 포함!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
 - **수리규모** : 해당 수리의 추정가격으로 구분

관련조문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10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I.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시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천연기념물				중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저		
	기념물						
	민속문화재						
II.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문화재자료						
	5개 이상의 공종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III. 수리규모	2개 이하의 공종			하			
	추정가액 3억원 이상			대			
	추정가액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액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규모	대	1	1	2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2	3	3			
	중	1	2	3			
		2	2	3			
		3	3	3			
	소	2	2	3			
		2	3	3			
		3	3	3			

*. '주변정비' 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답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나. 입찰등급의 조정

- 입찰등급 산정 후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 한단계 상·하향 가능**.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 3등급 적용 가능
 - *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이란 고층에 의하여 정비되는 관리소, 화장실이 아닌 편의시설 설치(보수)를 의미
- 2016~17년 시범실시 대상으로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의 경우, 입찰등급 1~2등급 내 상·하향은 가능하나 3등급으로 조정은 불가

다. 입찰방식

- 문화재수리 공사 입찰방식
 - 입찰등급 1·2등급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
 - 입찰등급 3등급 : 기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발주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수리대상에 대한 이해도·수리방법의 적정성·현장관리·현장공개 등에 대해 입찰자가 기술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2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심사

관련조문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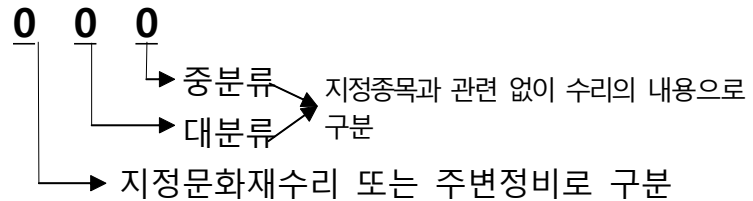
* 시행령 제106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6조

2. 문화재수리 분류(수리코드)(별표 2)

가. 문화재수리 분류 개요

- ‘문화재수리 분류’란 해당 문화재수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으로, 입찰등급,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등에서 활용
- ‘수리코드’란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해 부여된 세자리 숫자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등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판단 기준으로 활용

[수리코드]



나. 수리코드 부여 단계

- STEP 1. 해당 문화재수리가 지정문화재인지 주변정비인지 구분
*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가 복합된 경우 : 수리금액 기준 주된 내용으로 구분
- STEP 2. 대분류와 중분류 결정
: 지정종목(국보, 보물, 사적 등)과 관계없이 수리 내용으로 구분
- STEP 3. 수리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 주구조가 복합되어 있다면 수리금액 기준 주된 수리로 구분

다.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의 구분

- 지정문화재 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가지정문화재를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 *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가 아님. 다만, 주변에 지정문화재가 있는 경우 '주변정비'로 인정될 수도 있음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 지정문화재를 둘러싼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단, 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동일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한정)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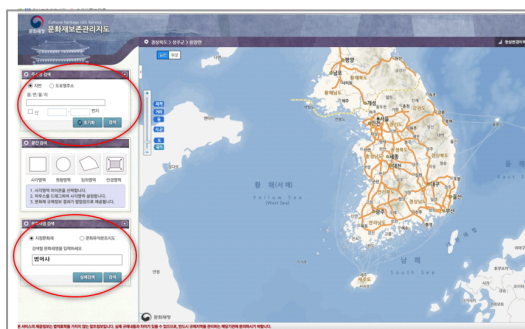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의 구분(예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로, 주변정비에 해당
 - 예) 서울 화계사 명부전 보수정비
 - 문화재수리이며 주변정비에 해당
 - ∵ 명부전은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로 이를 정비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주변정비)
 - 예) 사찰권역(해당 문화재와 동일 소유자 및 관리단체)에 해당되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인 경우 문화재수리이며 주변정비에 해당

<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의 구분(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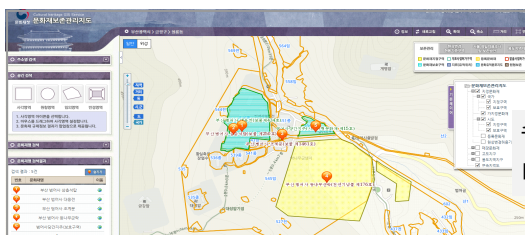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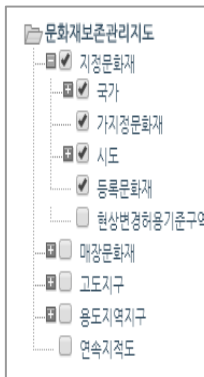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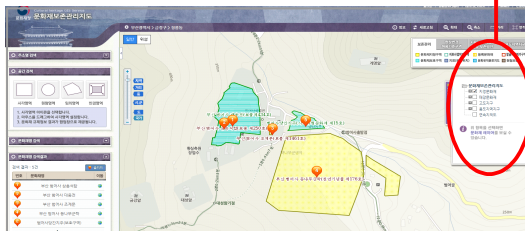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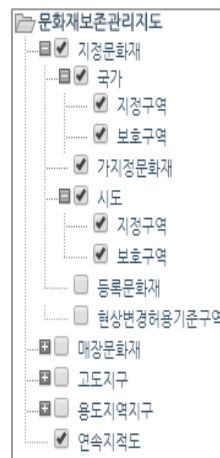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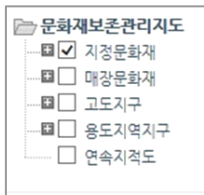
- 국보·보물 등 점단위 문화재의 주변정비라도, 해당 수리가 사적·명승·천기 등 면으로 지정된 문화재의 지정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지정문화재수리
 - 예) 구례 화엄사 대응전 주변 석축정비
 - 지정문화재수리
 - ∴ 수리명칭 상 주변정비로 판단되나, 사적 제505호 구례 화엄사 지정구역 내 위치 TIP. 지정구역 내인지 보호구역 내인지 구분하는 방법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 문화재 공간정보(GIS) > 문화재보존관리지도)

[문화재 또는 주소로 검색]



체크박스

-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 체크박스 해제
- '연속지적도' 체크박스 체크



수리위치가 지정구역 내인지 보호구역 내인지 판단

→ 지정구역 내 문화재수리 : 지정문화재수리 / 보호구역 내 문화재수리 : 주변정비
 지정구역·보호구역 내 수리가 아니더라도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보수·복원·정비 등을 하는 행위 : 주변정비

라. 대분류 · 중분류

- 문화재 지정종목(국보·보물·사적 등)과 관련 없이 수리의 내용을 검토하여 구분
- 수리의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면 수리금액 기준으로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구분

< 수리코드(예시) >

수리내용	분류	수리코드	비고
사적 지정구역 내 목조화장실 개축	지정문화재수리-건조물-목조건축물	111	-
보물인 대웅전의 기단보수와 주변정비인 목조 선방개축 (선방개축비가 더 큼)	주변정비-건조물-목조건축물	211	-
기념물 지정구역 내 보물인 대웅전(목조) 후면의 석축보수	지정문화재수리-건조물-목조건축물	111	담장·펜스·배수로·석축·담쟁이(지장목) 제거 등은 부대시설 보수(정비)에 해당 되므로 대웅전 후면 석축보수는 대웅전의 부대시설 보수에 해당
사적으로 지정된 지석묘군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석축설치	지정문화재수리-성곽·유적·유적지	121	담장·펜스·배수로·석축·담쟁이(지장목) 제거 등은 부대시설 보수(정비)에 해당 되므로 유적지 부대시설 보수에 해당
사적인 경주 남산 문화재구역 내 위치한 한 사찰에서 법당(목조) 신축	지정문화재수리-건조물 - 목조건축물	111	-
사적인 부안 구암리 지석묘군 내 위치한 고인돌 보존처리	지정문화재수리 - 보존처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
사적인 창원 진동리유적 내 탐방로 정비	지정문화재수리 - 성곽·유적 - 유적지	121	-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

1. 지정문화재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밭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밭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3. 균형가격(제9조)

- 균형가격 : 제9조제2항에 따른 투찰가격의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절사)
 - 균형가격 산정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종합점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 균형가격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향후 종합점수 산정 대상인 경우
 - 입찰서 20개 초과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 이상 20개 이내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 미만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50이상, 최하위 입찰금액
 - 입찰서 2개 : 제외 없음
- * 입찰서 개수 산정 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제외

관련조문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경우는 100분의 85

< 균형가격 산정(예시) >

○ 유효한 입찰서가 12개 들어왔을 경우

- * 유효한 입찰 :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제외한 입찰
(지방계약법에 따른 무효입찰 및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84%미만인 입찰서는 제외)

구분	입찰금액 (천원)	비고
A	58,000	하위 1개 제외(하위 10%)
B	58,200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 해당
C	58,250	
D	58,320	
E	58,340	
F	59,000	
G	59,100	
H	59,110	
I	59,500	상위 4개 제외(상위 40%)
J	59,990	
K	60,000	
L	60,100	

- 유효한 입찰서 12개 중
 - 입찰금액 순 상위 40%인 4개
($12 \times 0.4 = 4.8 \rightarrow$ 소수점 절사)
 - 입찰금액 순 하위 10%인 1개
($12 \times 0.1 = 1.2 \rightarrow$ 소수점 절사)
 를 제외한 7개 입찰금액의 평균값이 균형가격
- 균형가격 = (B~H 입찰금액의 합)/(B~H 입찰서 개수)

$$= \frac{410,320,000}{7} = 58,617,142 \text{ 원}$$
 (소수점 이하 절사)

입찰서 개수	입찰금액 제외범위
1개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함
2개	입찰금액 2개 산술평균
3개 이상 10개 미만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50%, 최하위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10개 이상 20개 이하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10%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20개 초과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40%, 하위 20% 입찰서의 입찰금액 제외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경우 : 국가계약법에 따른 무효입찰 및 예정 가격보다 높거나 85%미만인 입찰서는 제외

4. 증명서 발급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 발급권자

-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 건 : 발주자인 국가 및 지자체
-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교부한 국가 또는 지자체
- 그 외(하도급 포함) : 발주자

- 발급 시 주의사항

- 수리코드 및 수리금액 단위 확인
- 경유란 명기(감독관 또는 감독부서 및 발급자명 등)
-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 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관련 협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기관(제8조제1항제6호 관련)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문화재청 고시 제2018-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아래 기관에 위탁함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2일

문화재청장

1. 수탁기관 : 문화재수리협회(회장 : 김상임)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47 서광빌딩 6층 602호

2. 위탁업무의 내용

- 법 제13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 학력, 자격 및 근무처 등의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 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공시 및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 제공 및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발급신청 >

- 발급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문화재수리 실적
- 발급절차 :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해당 문화재수리 발주자에 신청

나의 나라장터	NO	구분	공동도급방식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실적검색	1	대표	유사	1298656395

[실적증명서 작성]

-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 시설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 공종별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실적 명세서
- 시설공사 연간 시공실적 명세서

나라장터
(www.g2b.go.kr)
> 나의 나라장터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I. 일반적인 사항

*수리명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수변공원 등 조성사업공사	*수리코드	
*수리위치		*발주기관(발주자)	
수리 업체(대표)	*업체명		*수리업체 종류 및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 및 준공 (강기계속 또는 계속의 공사는 총 문화재수리 기준작성)	*계약일자	2018/11/19	수리금액 (준공금액)
	착공일자	2018/10/29	수리기간(일)
	준공일자	2018/11/05	*문화재명
수리 구분	*지정번호		
	*수리구분	<input type="radio"/> 지정문화재 수리 <input type="radio"/> 주변정리 ※수리코드 선택 시 자동입력됩니다.	
*공동도급여부	<input type="radio"/> 공동이행방식 <input type="radio"/> 분담이행방식 <input type="radio"/> 단독도급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작성

V. 발급처 정보

*발급기관	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전화번호	031-678-2382
	주소	경기도 안성시 시월길 25-0 (봉산동)	Fax 번호	031-678-2382
	담당부서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	담당자	박현미
	SMS 전송	<input type="radio"/> 예 <input checked="" type="radio"/> 아니오		

발주자 및 관련
부서 작성

○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

- 발급권자 : 문화재수리업 등록권자
- 발급 시 주의사항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별 발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
 -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택 1)
 - : 등록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발급 후 자격증 사본 등으로 문화재수리업자 별도 증빙
 - : 자격증을 확인하여 자격종목, 번호 및 자격증취득일 변경 기재.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자 별도 증빙 불필요

○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별지 제6호의2서식)

- 발급권자 : 문화재수리업 등록권자
- 발급 시 주의사항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종별 발급

5.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10조)

-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
: 수리이행능력(60)+경영상태(10)+경제성(30)
-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는 경우)
: 수리이행능력(40)+문화재수리계획(20)+경영상태(10)+경제성(30)
- 입찰등급 2등급
: 수리이행능력(50)+경영상태(10)+경제성(40)
- 감점요소
 - 결격사유($\Delta 20$) : 낙찰자 결정일 기준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계약신뢰도(매 건당 $\Delta 1.0$)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시 2년간,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시 2년간

관련조문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1]
 -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세부심사방법(제12조)

가. 수리이행능력(별표 5)

○ 수리실적 심사 : 최근 5년간 업체의 문화재수리 실적

-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text{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times 100$

단, 입찰공고 시 수리실적 평가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을 별도 명기하였다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그에 따름

* 수리실적 평가기준 조정 :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 70%까지 하향 가능(단, 최저금액 50억)

- 실적인정 범위(입찰하고자 하는 업종의 실적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준공한 모든 문화재수리(수리코드와 무관)
 -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 기준(정산 후 실 준공금액)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별 실적 합산(시공비율 미반영)
- 증빙서류
 - 관련 협회 발급 시 :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 발주자 등 그 외 발급 시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 관련 협회 발급이 아닌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시 추가제출 서류]

1.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사본)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문화재수리

[참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가 발주한 문화재수리의 실적증명서 발급은 보조금 교부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발급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수리 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수리실적 심사(예시)>

○ (예시 1)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입찰건 / 추정가격 400,158천원

최근 5년간 수리실적	수리 코드	발주 유형	수리 실적금액(천원)		비율	평가 점수
			개별 실적	합산금액		
A 수리	수리 코드 무관	공공	165,165	616,400	154% (616,400/400,158)	9.65
B 수리		공공	125,287			
C 수리		민간	73,216			
D 수리		공공	172,549			
E 수리		공공	80,183			

○ (예시 2) 입찰등급 2등급 입찰건 / 추정가격 160,920천원

최근 5년간 수리실적	수리 코드	발주 유형	수리 실적금액(천원)		비율	평가 점수
			개별 실적	합산금액		
A 수리	수리 코드 무관	공공	95,756	398,641	248% (398,641/160,920)	20
B 수리		공공	45,872			
C 수리		민간	83,288			
D 수리		공공	112,942			
E 수리		공공	60,783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배치 기술자만 심사)

*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는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 적용

- 배치 기술자 : 입찰건에 낙찰될 경우 배치 예정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
- 평가기준(최근 5년간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단,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산건수의 80%만 인정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보정계수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수리구분	등급계수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기간 산정 시 공사중지 기간 포함]
 * 문화재수리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 현장 배치 기간 : 배치일부터 다른 기술자 변경 배치일 전일까지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
 * 입찰공고 시 평가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을 별도 명기하였다면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판단 시 추정가격은 그에 따름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로 심사
- 증빙서류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 관련 협회 발급의 경우에는 '수리실적 심사' 관련 내용 참조
 - 현장배치확인표(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사본)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참고] 현장배치 확인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작성된 서류로, 기 작성되었던 현장배치확인표의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 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동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 배치기술자의 교체 >

- **낙찰 후 배치 기술자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 기준 2년 이내 위반건수 1건당 종합점수 1.0점 감점-위반여부 문화재청에 확인
-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 가능**(환산건수 산정 기준일-배치 기술자 변경 요청일)
 - 배치 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배치 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 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 위반 시 감점대상 :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단, 분담이행 구성원 제외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1) >

○ 입찰등급 2등급, 수리코드 112, 추정가격 128,000,000원인 입찰건

- 배치 기술자 '홍길동' 의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수리명	수리 코드	등급 계수	수리 기간 (일)	보정 계수	현장 배치 기간 (일)	준공금액 (천원)	환산건수	
							개별	합계
A수리	112	1.2	650	2.0	230	325,000	$2.0 \times 1.2 \times \frac{230}{650}$	3.052
B수리	212	1.0	472	2.0	175	170,000	$2.0 \times 1.0 \times \frac{175}{472}$	
C수리	112	1.2	360	1.0	190	165,000	$1.0 \times 1.2 \times \frac{190}{360}$	
D수리	112	1.2	200	1.0	138	150,000	$1.0 \times 1.2 \times \frac{138}{200}$	
E수리	112	1.2	90	1.0	70	95,000	추정가격 미달	
F수리	222	1.0	150	1.0	150	274,000	수리코드 불일치	

→ 홍길동이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한 경우 : 평가점수 7.5점

→ 홍길동이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 환산건수 3.052건의 80%만 인정되어 $3.052 \times 0.8 = 2.442$ 건이므로 7.0점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2) >

○ 입찰등급 1등급(보수+조경 복합공종), 수리코드 111, 추정가격 572,000,000원인 입찰건

- 목조건축물 보수(수리코드 111) 시공비율 60%(343,200,000원) / 보수기술자 홍이동

- 조경식재·정비(수리코드 140) 시공비율 40%(228,800,000원) / 조경기술자 홍삼동

* 보수기술자 홍이동의 환산건수 : 5.342건 → 평가점수 10.0점

* 조경기술자 홍삼동의 환산건수 : 2.862건 → 평가점수 9.5점

→ 복합공종 심사 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평가점수 = $\sum(\text{업체별 평가점수} \times \text{시공비율})$

∴ $10.0 \times 0.60 + 9.5 \times 0.40 = 9.80$ 점

* 배치 기술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배치기술자에 대한 환산건수의 80%만 인정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모두 심사/자격종목 무관)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

[참고] 근무기간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에 명기된 입·퇴사일. 다만, 입·퇴사일이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명기된 자격취득일(상실일)과 상이한 경우 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상실일)에 따름

[6개월 미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문화재수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두 기술자(기능자)의 근무기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퇴사하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경력계수로 평가

- 평가기준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해당 자격 취득 연수	경력계수	경력별(경력계수 기준) 인원수	등급계수
15년 이상	2.0	2명 이상	10.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1명	8.0
7년 미만	1.0		

단,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가능(계산 후 높은 점수를 받는 점수로 반영 가능)

예) 해당 자격 취득 연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case 1. $2.0 \times 10.0 + 1.5 \times 0.0 + 1.0 \times 8.0 = 28$ 점
 case 2. $2.0 \times 8.0 + 1.5 \times 8.0 + 1.0 \times 8.0 = 36$ 점
 → 높은 점수인 36점으로 반영

- 증빙서류
 -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 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

○ 입찰등급 2등급, 입찰공고일 2016.11.10. / 보유 기술자 능력 심사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해당 업체 6개월 이상 근무 여부	경력 (년)	퇴사일	신고일
1	보수	000	홍 일 동	2000.03.08	'12.01.01	○	16	-	
2	보수	000	홍 이 동	2001.11.09	'15.01.01	○	15	-	
3	보수	000	홍 삼 동	2008.03.08	'16.05.01	×	8	'16.09.01	'16.09.09
4	단청	000	홍 사 동	2001.03.08	'16.09.09	×	15	-	
5	조경	000	홍 오 동	2014.03.08	'15.01.01	○	2	-	
6	단청	000	홍 육 동	2016.09.09	'11.01.01	×	-	-	-
7	보수	000	홍 칠 동	2013.03.08	'16.09.09	×	-	-	-

→ 홍삼동(경력 8년, 경력계수 1.5) 퇴사 후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홍사동(경력 15년, 경력계수 2.0) 입사

- 홍사동의 입사일이 홍삼동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변경신고 완료
- 홍사동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홍삼동의 경력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므로 인정 가능
단, 합산 시 홍삼동의 경력계수인 1.5으로 인정

→ 15년 이상 2명(경력계수 2.0, 등급계수 10.0), 7년 이상 15년 미만 1명(경력계수 1.5, 등급계수 8.0), 7년 미만 1명(경력계수 1.0, 등급계수 8.0)

따라서, 평가기준 = $2.0 \times 10.0 + 1.5 \times 8.0 + 1.0 \times 8.0 = 40$ 점 이므로, 보유 기술자 점수는 5.0점

* 보유 기능자 점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

○ 수리업경력 심사

- 평가기준 =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
단, 해당 입찰건에 입찰하고자 하는 업종의 문화재수리업을 말함

예) 입찰공고일 기준 보수단청업 10년, 조경업 4년인 문화재수리업자가 조경업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은 4년 1개월

-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이 원칙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의 등록일과 실제 등록일이 상이한 경우]

- 사례 1. 소재지 변경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는데 소재지 변경일 또는 소재지 변경 신고일 등을 등록일로 명기
 - 사례 2. 포괄적 양도(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경우에 한함)를 하여 수리업 영위기간이 연속되어야 하나 등록증에 양도일 등을 등록일로 명기
- ⇒ 대처방안 I. 등록증의 등록일 변경 후 제출
대처방안 II. 등록증 상 등록일과 실제 등록일이 상이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유서 제출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신인도 심사-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실적(건수)

* 소재지 기준

: 광역자치단체 기준(서울특별시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에 편입하여 판단)

: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 모두 인정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

: 입찰 시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하향조정된 경우에는 준공금액이 해당 가격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

- 증빙서류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관련 협회 발급의 경우에는 '수리실적 심사' 관련 내용 참조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 인정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 신인도 심사-영업정지 처분 심사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 * 최근 5년간 :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증빙서류 :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영업 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 신인도 심사-안전관리 심사

-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text{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times 100$

* 재해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재해율×0.5+최근년도 1년 전 재해율×0.3+최근년도 2년 전 재해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

* 건설업 재해율 :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 최근 3년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이 발표된 최근년도 기준 3년

-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참고] 건설업 재해율, 입찰자의 산업재해율확인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신인도 심사-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심사대상 업종 내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심사

- 인정기준(공동계약방식 입찰참여에 한함)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부대 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불인정

- 증빙서류 : 별도 서류 없음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평가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신인도 심사-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최근 5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text{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 \times 100$$

- * 최근 5년간 :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보유기술자 :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이상 근무한 자

- 증빙서류

-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 교육수료증 사본(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 전문 교육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교육
- * 교육수료증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전문 교육 이행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전문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전문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나. 경영상태(별표 6)

- 평가기준(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 자기자본(유동) 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 비율}} \times 100$
-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역 분석"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기준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자산총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심사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경영상태 세부심사(예시)>

○ F42.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확인

- 해당 문화재수리의 입찰공고문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 제시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 조사·연구자료 > 간행물 > 주제별검색 > 기업·산업 > ‘기업경영분석’ 검색


○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 예시

- 자기자본비율 = 77,845,751,543 / 152,291,196,928*100
- 유동비율 = 117,614,788,093 / 48,709,125,588*100

제 3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산		부 채	
I . 유 동 자 산	117,614,788,093	I . 유 동 부 채	48,709,125,58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183,145,61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1,100,143,948
2. 단기금융상품	7,676,772,648	2. 단기차입금	6,327,000,000
3.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26,182,440,806	3. 유동충당부채	3,663,728,063
4. 재고자산	68,780,719,158	4. 기타유동부채	7,018,179,221
6. 기타유동금융자산	618,821,469	6. 기타유동금융부채	1,710,074,366
6. 기타유동자산	7,373,788,697	II . 비 유 동 부 채	26,736,318,797
II . 비 유 동 자 산	34,676,407,836	1. 장기차입금	20,000,000,000
1. 장기금융상품	3,371,906,119	2. 비유동충당부채	2,112,376,766
2. 해당금융자산	22,473,600,702	3. 기타비유동부채	3,623,942,031
3. 투자부동산	0	부 채 총 계	74,445,444,386
4. 유형자산	3,678,493,996	자 본	
6. 무형자산	1,721,838,696	I . 자 본	60,447,432,500
6. 기타비유동채권	1,283,964,697	II . 기 타 불 입 자 본	6,743,136,062
7. 기타비유동자산	2,246,413,726	III . 기 타 자 본 구 성 요 소	309,433,020
자 산 총 계	152,291,196,928	V . 이 익 잉 여 금	21,346,749,961
		자 본 총 계	77,845,751,54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52,291,196,928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7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수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7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 경제성(별표 7)

○ 평가기준(비율) = $\frac{\text{해당 투찰금액}}{\text{제9조제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균형가격]

- 균형가격 : 제9조제2항에 따른 투찰가격의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절사)
- 균형가격 산정에서도 제외되고 향후 종합점수 산정 시에도 제외되는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의 경우는 100분의 85미만
- 균형가격 산정에서는 제외되나 향후 종합점수 산정 대상인 경우
 - 입찰서 20개 초과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 이상 20개 이내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40이상, 하위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 입찰서 10개 미만 :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50이상, 최하위 입찰금액
 - 입찰서 2개 : 제외 없음

< 균형가격 산정(예시)>

○ 유효한 입찰서가 12개인 경우

- * 유효한 입찰 :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를 제외한 입찰
(계약법에 따른 무효입찰 및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84%미만인 입찰서는 제외)

구분	입찰금액 (천원)	비고
A	58,000	하위 1개 제외(하위 10%)
B	58,200	균형가격 산정 범위에 해당
C	58,250	
D	58,320	
E	58,340	
F	59,000	
G	59,100	
H	59,110	
I	59,500	상위 4개 제외(상위 40%)
J	59,990	
K	60,000	
L	60,100	

- 유효한 입찰서 12개 중
 - 입찰금액 순 상위 40%인 4개
 - 입찰금액 순 하위 10%인 1개
 를 제외한 7개 입찰금액의 평균값이 균형가격

· 균형가격 = (B~H 입찰금액의 합)/(B~H입찰서 개수)

$$= \frac{410,320,000}{7} = 58,617,142\text{원}$$

(소수점 이하 절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라. 결격사유

- 평가기준 : 낙찰자 결정일 기준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20

마. 문화재수리계획(별표 9)

* 입찰공고에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이라 명기된 경우에 한함

- 현장설명(제7조제2항)
 - 교부서류를 계약담당자 근무장소에 비치 및 입찰자에 교부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 교부서류 : 설계도면 등 설계서,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 심사대상 :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 37점 이상 입찰자의 문화재수리 계획서 단, 평가점수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 5위까지만 심사
- 평가기준
 - 입찰자 제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가 심사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를 기준으로 심사
- 평가점수 : 각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

[심사위원회]

- 자격 :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 *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전문위원)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였거나 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구성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함
 - *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 심사방법
 - 심사위원장 포함 2/3이상 출석으로 개의
 -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 청취
- 유의사항(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 입찰자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에서 8점 감점
 -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

< 문화재수리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 시 불이익 >

- **낙찰 후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계획서 이행여부 수시 점검.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 기준 2년 이내 위반건수 1건당 종합점수 1.0점 감점-위반여부 문화재청에 확인
- 점검대상 항목 :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감점대상 :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 단, 분담이행 구성원 제외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중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7. 공동수급체 심사(제14조)

가. 공동수급체 심사 대상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부대 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복합업종이 필요한 문화재수리에서 주된 문화재수리만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

나. 수리이행능력

- 수리실적 심사 : 구성원 별 수리실적 합산(시공비율 미적용)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배치 기술자만 심사)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 5호 서식)으로 심사
 -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거나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공동수급체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예시) >

공동수급체 A+B+C					
A사		B사		C사	
평가점수	시공비율	평가점수	시공비율	평가점수	시공비율
10.0	45%	9.5	25%	9.0	30%
평가점수					
$10.0 \times 0.45 + 9.5 \times 0.25 + 9.0 \times 0.30 = 9.575\text{점}$					

*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제11조제2항)

○ 수리업경력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 신인도 심사-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점수만 반영

○ 신인도 심사-영업정지 처분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 심사-안전관리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 신인도 심사-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 세부심사방법 참조

○ 신인도 심사-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나. 경영상태

- 구성원 별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다. 문화재수리계획

-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심사

관련조문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대 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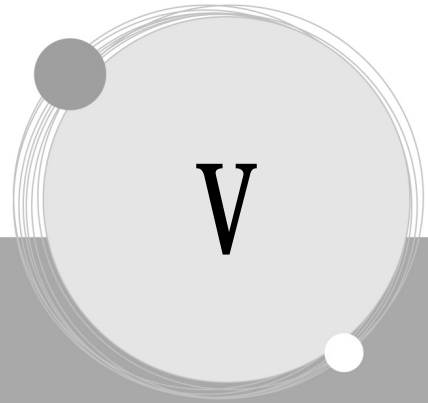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주요내용

V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주요내용

1. 적용대상(제2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

관련조문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서의 구성 비목(제4조)

- 문화재수리원가 : 공사로 발주된 문화재수리의 원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 재료비 = 재 료 량 × 단위당 가격
 - 노무비 = 노 무 량 × 단위당 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 일 반 관 리 비 : 기업의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이 율 : 영업이익
- 손 해 보 험 료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
- 자 문 수 당 :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

관련조문

- 제4조(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의 원칙)** ① 공사로 발주된 문화재수리의 원가(이하 "문화재수리원가"라 한다)는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1.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2.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3.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자문수당(제7조)

- 자문수당 :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
- 작성방법
 -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
 - 준공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 필수

관련조문

제7조(작성방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이하 '자문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동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 문화재수리원가(제6조, 제8·9·10조)

가. 문화재수리원가

-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나.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간접재료비 : 해당 문화재수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상. 단 재료구입 후는 경비
- 작업설, 부산물 등 :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관련조문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문화재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구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라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해당 문화재수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투사지·모조지·훈증제·피복용 시트·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먹·정 등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가설비계·수리용덧집 등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 ④ 문화재수리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노무비

○ 직접노무비

-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 간접노무비

- 보조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
- 간접노무비 : [별표 2]의 문화재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관련조문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문화재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① 직접노무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문화재수리 공정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별표 2]의 문화재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별표 2]

문화재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 (4) 노무량은 문화재수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수리규모*	수리기간	간접노무비율 (%)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하(183일)	13.1
	7~12개월(365일)	12.6
	13~36개월(1095일)	11.6
	36개월 초과(1096일)	10.8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6개월 이하(183일)	11.9
	7~12개월(365일)	11.4
	13~36개월(1095일)	10.4
	36개월 초과(1096일)	9.6
1억 이상 5억 미만	6개월 이하(183일)	11.6
	7~12개월(365일)	11.1
	13~36개월(1095일)	10.1
	36개월 초과(1096일)	9.3
5억 이상	6개월 이하(183일)	11.4
	7~12개월(365일)	10.9
	13~36개월(1095일)	9.9
	36개월 초과(1096일)	9.1

* 수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참 고] 산출경비 : 기계경비를 포함, 직접 소요량을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비목(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해 계산)

*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 중 '산출경비'에 대한 조달청 해석 인용

라. 경 비

○ 수리보고서 작성비

- 수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기 위한 비용
- 문화재수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제외

< 수리보고서 작성에서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노무비 >

- 수리보고서 작성비 산정 시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투입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노무비 반영 불가**
- 문화재수리 보고서는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에 작성 의무가 있으며,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노무비는 ‘간접노무비’ 로 기반영
- * 문화재수리법 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 ②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는 필요 시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문화재실측설계업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실측조사비 : 문화재수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과학적분석비 : 묵서 분석, 적외선 촬영, 연륜연대 측정 등 계약목적물의 원형 및 구재(舊材)의 상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해 해당 문화재 또는 내부 유물을 이전·보관·재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영상촬영비 : 문화재수리 과정의 기록보존 등을 위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비용

○ 현장공개비 :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문화재수리 '중점공개'의 날' 추진 지침]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VIII. 문화재수리 '중점공개'의 날' 추진 지침

1. 목 적

- 투명하고 개방적인 수리현장 필요성 대두, 지역주민과 일반인에게 수리과정을 공개, 신뢰감을 부여하고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계기 마련

- ❖ 문화재 수리현장 착공에서부터 완공까지 주요 공종별 재료 및 수리기법의 진행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학 및 관람코스로 공개를 추진
- ❖ 지역주민과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문화재 수리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외부 감시기능 효과를 통한 수리품질 향상도모
- ❖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온 문화재 수리를 일반 국민들과 함께함으로써 문화재 수리에 대한 인식 제고

2. 관리지침

- 시행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공개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청은 당해 문화재수리 특성과 수리과정별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도울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장공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지침 등에 안전시설은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관람준비 또는 안내에 따른 경비는 시설부담비를 확보하는 등 현장공개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조건에도 현장공개 대상임을 명확히 나타나도록 한다.
 - 시행청은 수리공사 계약이 완료 후, 시공자와 현장공개 세부계획 수립 및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고 공개방침을 언론배포 등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구분	현장공개에 대한 발주기관의 역할
기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과 운영방안 협의를 통해 공개 범위, 방법 등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의 안전성 확보, 공개 범위, 기간, 경비 및 비용 추이 ○ 기초단계에서 공개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설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방법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결정 ○ 공개를 위한 관람객 안전시설 등 설치반영
공개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공개에 따른 시설의 안전성 검토 ○ 공개 현장내 해설사 및 시공자에 대한 역할분담, 안전교육 실시 ○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공개 시 안전에 대한 지시 및 확인 ○ 현장공개 계획을 관내 학교에 사전 공지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에 알고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도 적극 활용 등 홍보 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현장공개 시 안전은 현장관리 및 공개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사항으로 시행청과 시공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공사원가계산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경비 :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지급수수료, 보상비, 관급자재 관리비 등
- 기타경비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등
 - 기타경비 : [별표 3]의 문화재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별표 3]

문화재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

1.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기타경비}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times \text{기타경비율}$$

2. 기타경비율

수리 규모*	기타경비율(%)
5천만 원 미만	8.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7
5억 원 이상	6.2

* 수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참 고] 산출경비 : 기계경비를 포함, 직접 소요량을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비목(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해 계산)

*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 중 '산출경비'에 대한 조달청 해석 인용

관련조문

- 제10조(경비)** ① 경비는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문화재수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② 경비는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수리보고서 작성비는 수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기 위한 비용(재료비를 포함하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실측조사비(학술적 고증연구를 위한 조사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과학적분석비는 목서 분석, 적외선 촬영, 안료 및 접착제 성분 분석, 연륜연대 측정, 수종분석 등 계약목적물의 원형 및 구재(舊材)의 상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는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해 해당 문화재 또는 내부 유물을 이전·보관·재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촬영비(제작비를 포함한다)는 문화재수리 과정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6. 현장공개비는 문화재수리의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7. 전력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8.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9.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0.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11. 기술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12. 연구개발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13. 품질관리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치목장, 가설창고, 임시 유물보관소(유물 등의 임시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수리안내판, 화장실

- 등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지급임차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6.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의 비용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7항을 준용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손해보험료는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반영한다.
 17. 보관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8.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0. 폐기물처리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1. 지급수수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문화재수리로 인해 수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관급자재 관리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비용은 [별표 3]의 문화재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수도광열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나. 복리후생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보통인부·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다.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라. 여비·교통비·통신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마. 세금과 공과금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해당 문화재수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바.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수리보고서 작성비 및 실측조사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그 밖의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마.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일반관리비 : [별표 4]의 문화재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

[별표 4]

문화재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

1.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

수리 규모*	일반관리비율(%)
5천만 원 미만	6.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수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참 고] 산출경비 : 기계경비를 포함, 직접 소요량을 계상하여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비목(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 가능한 비목은 이에 의해 계산)

* 시설공사 원가계산기준 중 '산출경비'에 대한 조달청 해석 인용

관련조문

제11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문화재수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바. 이윤

- 영업이익.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의 15% 이하로 반영

사. 손해보험료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
- 손해보험료 = 총문화재수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손해보험료율
- *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의 손해보험료 = (총문화재수리원가+관급자재)×손해보험료율

관련조문

제12조(이윤) ①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문화재수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②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제13조(손해보험료) ① 손해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문화재수리의 총문화재수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②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문화재수리 부분의 총문화재수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율은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V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관련 FAQ

VI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관련 FAQ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 관련 FAQ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관련>

Q1. 문화재수리를 낙찰 받은 후 배치 기술자(기능자)를 입찰 전 혹은 수리 중에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변경 배치할 수 없습니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제출한 기술자(기능자)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으로 향후 2년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의 종합점수 산정 시 매 위반건당 1.0점씩 감점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Q2. 입찰업체 소속이 아닌 기술자를 배치 기술자로 제출해도 되나요?

☞ 배치 기술자(기능자) 또는 보유 기술자(기능자)는 모두 입찰업체 소속 직원에 한해 평가하며, 소속 여부는 평가 대상 문화재수리업 관련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찰업체 소속이 아닌 기술자를 배치 기술자로 제출할 경우,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점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3.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올림)하여 계산하나요?

☞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심사 시 평가기준의 경우는 소수점 끝까지 계산한 후 그에 따른 평가점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 등으로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나올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예규 제11조)되어 있습니다.

Q4. 추정가격 5억 이상 되는 문화재수리의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만약 A라는 기술자가 4억 5천만 원 상당의 수리 실적이 10건 이상 있다하더라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에서는 1건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인정받지 못합니다.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경우만 인정이 되는데, 이는 [별표 2]에 따른 동일 문화재수리이면서 준공금액이 추정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Q5.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최근 5년간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인데,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 두 가지 조건(동일 문화재수리이면서 준공금액이 추정가격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동등이상 문화재수리로 인정됩니다. 이는 신인도 심사 중 수리지역 전문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6.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 시 A라는 문화재수리에서 착공할 때에는 기술자 B를 배치하였으나, 공사중지가 있는 다음에는 기술자 C로 변경하여 배치 한 경우 공사중지 기간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경우 ‘현장배치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지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자 B의 현장배치기간은 기술자 C의 현장배치일 전날까지이며, 기술자 C의 현장배치기간은 현장배치확인표의 현장배치일부터입니다.

Q7.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배치 기능자는 경력관리제도가 시행 후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최고배점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현재의 제도 하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우는 그 실적을 증빙할 공적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력관리제도가 정착되면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심사할 예정입니다.

Q8. 현장배치 후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실적으로 배치기간을 소급해 주나요?

☞ 실적증명서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간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 전 배치기술자의 실적은 후임 기술자가 배치되기 전일까지, 변경된 배치기술자는 새로 배치된 날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9. 동시에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 동일한 기술자를 배치 기술자로 제출해도 되나요?

☞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낙찰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동시에 진행되는 입찰을 모두 낙찰 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 개수를 초과하게 되거나 발주자가 중복배치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하여야 합니다.

Q10. 실적증명서에 배치 기술자란을 기입할 때 현장배치확인표에 따라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현장배치확인표에는 준공예정일과 실제 준공일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배치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까?

☞ 실적증명서에서 배치 기술자의 배치기간은 실제 배치된 기간을 말하므로, 현장배치확인표, 현장대리인(변경)선임계 및 준공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발주자가 해당 기술자가 실제 배치된 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관련>

Q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 상위 경력 인원을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업체에 15년 이상 경력의 인원이 2명이고 7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인원은 없다고 할 때, 이를 15년 이상 1명과 7년 이상 15년 미만 1명으로 점수 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모두 산정하여 높은 점수를 받는 쪽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에서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15년 미만 0명, 7년 미만 1명의 평가기준 점수는
 $2.0 \times 10 + 1.0 \times 8.0 = 28\text{점}$

15년 이상 1명, 7년 이상 15년 미만 1명, 7년 미만 1명의 평가기준 점수는
 $2.0 \times 8 + 1.5 \times 8 + 1.0 \times 8.0 = 36\text{점}$

이므로, 평가기준 점수를 28점이 아닌 36점에 해당되는 배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계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상위 경력자를 이동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하위 경력의 인원을 상위 경력의 인원으로는 이동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2.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를 작성할 때, 기술자나 기능자가 회사에 자격증 취득 이전에 입사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기간도 6개월 이상 근무 기간 산정 시 포함되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으로 심사요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 후 근무기간만 포함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입사한 기술자가 최근 1년간 문화재수리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다가 (1년 전에는 다년간 수리업체 근무경력이 있음) 해당 입찰에 참여예정인 문화재수리업체에 입사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2개월 근무한 경우, 이전 직장(1년 이전에 근무했던)의 경력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로 소속 여부는 대상 문화재수리업 관련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으로 평가하며, 업체의 안정적인 인력운용 등을 판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업체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다른 업체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상관없이 현 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이 입찰공고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도 근무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합산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보유 기술자 심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고 근무한 기술자의 근무사실을 4대 보험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보유기술자 심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권자인 시·도가 발급한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 및 기능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 당시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과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의 입·퇴사일은 제출하신 4대보험의 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Q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를 보면 보수기술자나 단청기술자 등 분야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기술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력이라는 전제하에 A회사에는 보수기술자 3명과 단청기술자 1명이 B회사에는 보수기술자 1명과 단청기술자 3명이 있어도 같은 역량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보수와 단청은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점수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분야별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문화재수리업체의 영세한 경영규모를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분야별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Q6. 보유 기술자 평가 시 보수기술자(4년 경력)가 퇴사하고 단청기술자(15년 경력)가 새롭게 입사하는 경우,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심사의 평가대상이 되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와 달리 자격증의 종류나 해당 입찰건의 공종과 관계없이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찰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산정 시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기능자)가 문화재수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4년 경력 보수기술자의 퇴사 전까지 근무기간과 15년 경력 단청기술자의 입사 후 근무기간의 합이 입찰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이면 4년 경력의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15년 경력의 단청기술자가 퇴사하고 4년 경력의 보수기술자가 입사한다면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근무기간 합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7. 보수기술자(경력 10년, 경력계수1.5)가 보유기술자 능력심사 평가시 7년 미만인 경력계수 1.0을 적용하여 평가받고, 이후 위 보수기술자가 퇴사하고 대신 단청기술자(경력 1년, 경력계수1.0)가 입사하면 퇴사하는 보수기술자와 동등한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평가기준 산정방식과 상관없이 근무기간 합산 기준은 동등 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8.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와 관련하여 보수단청업이 입찰에 참여할 때 보수기술자나 단청기술자 말고도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가 입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평가대상 업종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에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인정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는 자격종목을 구분하지 않고 기술자 및 기능자로만 구분하여 입찰업체 소속 직원에 한해 평가하며, 소속 여부는 평가 대상 문화재수리업 관련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으로 판단합니다.

Q9.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심사에서 기술자(기능자)가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기능자)로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1회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동등이상 2-3인이 6개월 이내에 교체되어도 인정해 주는가요?

☞ 1회에 한해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이며, 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Q10. 2개의 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과 조경업)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자가 보수단청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 조경업에 등록된 조경기술자를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에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나요?

-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업체 소속 직원에 한해 평가하며, 소속여부는 평가 대상 문화재수리업 관련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입찰건이 보수단청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라면 보수단청업 관련 등록대장에 기재된 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만 평가하며, 조경업 관련 등록대장에 기재된 기술자(기능자)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양도·양수를 하고 기술자(기능자)도 모두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에서 고용승계한 기술자(기능자)의 근무기간 6개월 이상 여부를 산정할 때 양도한 회사의 근무경력을 합산할 수 있나요?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및 문화재수리 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기능자)의 근무경력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도한 회사의 기술자(기능자)가 고용승계된 경우 양도·양수일을 입사일로 보아야 합니다.

Q12.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입사일이 퇴사일 32일 전이면 근무기간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뜻 인가요?

- ☞ 네. 불가능합니다. 근무기간 합산 규정은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경력계수 및 변경신고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Q13. 보수기술자와 조경기술자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가 최근 보수기술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조경기술자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업체 소속 직원에 한해 평가하며, 소속여부는 평가 대상 문화재수리업 관련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술자가 평가 대상 업종의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4. 한 사람이 보수기술자(2017년 취득)와 단청기술자(1998년 취득)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등록대장에는 보수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시 단청자격증을 첨부하여 15년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는 자격증 종류와 상관 없이 평가하므로 2종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취득년수가 오래된 자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는 평가 대상 문화재수리업 관련 '문화재수리업등 등록대장' 을 근거로 발급되므로 보수기술자로 발급될 것이기에 별도로 단청기술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관련>

Q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에 '관련협회'가 추가되었는데 문화재수리협회를 뜻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문화재수리협회는 언제부터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문화재수리협회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자체양식)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가능한 문화재수리 실적은 협회에 신고된 실적에 한하며 신고된 실적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적신고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수리협회(02-584-186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청 고시 제2018-6호, 2018.01.12.) 문화재수리 경력 및 실적관리 등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수탁기관 : 문화재수리협회

Q2. 수리이행능력 심사 중 수리실적 심사는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받아놓은 실적증명서는 인정이 안되나요?

☞ 기존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 양식과 동 예규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새로 작성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2019.05월 개정·시행으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의 수리금액 단위가 천원으로 변경되었고, 감독부서 경유란 및 발급자 명기가 추가되었으므로 이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의 인정여부는 발주자에 직접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Q3. 기존 적격심사에서 사용되었던 실적증명서랑 다른가요?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는 수리코드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배치 기술자 심사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기간 기입란이 있는 등 기존 적격심사의 실적증명서와는 양식이 상이하므로 별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Q4. 실적증명서에서 준공금액이란?

☞ 모든 정산을 완료한 최종 준공금액을 뜻합니다.

Q5. 입찰 시 제출하는 실적증명서를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실제로 발주처에서 여러 장을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7건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7장의 실적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동 예규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규 제8조제2항에서 증빙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해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6. 실적증명서를 제출할 때,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 실적은 과거의 사실에 대해 발급받는 것이기에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7.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수리를 발주할 때에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발주해야 하나요?

-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시행되는 문화재수리는 지방계약법령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동 예규에 따라 발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하였더라도 교부조건으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면 동 예규에 따라 발주될 수도 있습니다.

Q8.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시행된 문화재수리의 실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 국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문화재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과는 달리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금 교부 후 설계승인, 정산 등 별도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은 발주자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민간발주 문화재수리*에 준하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 민간발주 문화재수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문화재수리

** 추가 서류

-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사본)
-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Q9. 사찰 등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 민간자본으로 수행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실적증명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 없이 민간자본으로 수행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발급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발주자가 됩니다. 다만, 민간자본으로 발주되는 문화재수리의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Q10. 실적증명서 발급은 문화재수리 담당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업무인가요?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업무는 해당 기관의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Q11.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발주처에서 실적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는 변동되는 자료이므로 입찰공고일 당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겠지만 실적증명서의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이므로 한 번에 여러 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해 입찰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12. 실적증명서에 배치기술자란을 기입할 때 현장배치확인표에 따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장배치확인표는 현재 기술자 배치가 중복이 될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가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리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배치와 관계없이 현장배치확인표는 작성되어야 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현장배치확인표는 과거 문화재수리를 수행할 때 발주자의 확인을 받았던 그 서류의 사본이어야 합니다.

Q12. 전통사찰에서 한 수리는 문화재수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전통사찰 내에 지정문화재가 있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문화재수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13. 발주처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받으러 갔는데 예전 공사 기록이 파기되어서 없다고 한다면 실적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 수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일이 최근 5년 이내인 실적만 인정되고, 그 기간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전의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Q14.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그동안 시행했던 문화재수리의 발주처를 모두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발급권자는

-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의 경우 : 발주자인 국가 및 지자체
-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교부한 국가 또는 지자체
- 그 외(하도급 포함) : 발주자

이므로, 실적증명서는 해당 발급권자에게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화재수리협회에 신고된 실적에 한해 협회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자체양식)를 제출하여도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재수리협회(02-584-186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차수로 계약한 다음 연차별로 분리해서 계약합니다. 이때 1차년도 준공된 실적의 실적증명서가 유효한가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문화재수리 실적은 최종 준공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이 아닌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Q16. 수리금액(준공금액)은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인가요?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에서의 수리금액(준공금액)은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적증명서의 수리금액(준공금액)이 도급자 설치 관급(지급)자재 금액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의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수리코드 관련>

Q1. 도급받았던 문화재수리가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문화재수리인지 주변정비인지 그 판단기준은?

- ☞ 지정문화재수리와 주변정비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금액의 비중이 큰 쪽이 주된 문화재수리가 되며 수리코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Q2. 수리코드는 발주처가 기입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시공자가 확인하고 요구하여 기입하는 것인가요?

- ☞ 발주처와 수리업체가 의견을 나누어 정확한 수리코드를 찾아 기입하시면 됩니다. 수리코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만약 향후 수리코드가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 또한 양쪽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처음 결정할 때 정확하게 확인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Q3.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건조물 구분을 보면 주구조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1층의 주구조는 콘크리트이고 2층의 주구조는 목조라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 건조물의 구분은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을 하되, 주구조가 질문과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비중이 큰 쪽을 주구조로 판단합니다.

Q4. 수리코드 111번의 실적이 수리코드 211번의 실적으로 인정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를 보면 동일 문화재수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수리코드 세 자리 숫자 중 첫째 자리는 지정문화재수리인지 주변정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일 문화재수리 구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리코드 뒤의 두 자리를 대분류와 중분류라고 하며,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라면 동일 문화재수리로 봅니다.

<입찰시스템 관련>

Q1. 이 예규가 적용되는 시스템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구축되어 있나요?

- ☞ 현재 문화재수리 입찰만을 위한 조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기로 작성 후 나라장터에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입찰에 참여하여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이란 기간은 증빙서류를 구비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 ☞ 입찰 시에 이미 원본서류들을 다 갖추어 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로 업로드하여야만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심사결과 발표 후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때 전산으로 제출했던 서류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기에 3일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Q3. 개찰을 하게 되면 종합평가하여 순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 예규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나요?

- ☞ 이번 예규의 경우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계약담당자가 수기로 계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Q4. 입찰서류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하면 변경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 ☞ 예규 제8조제4항에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입찰자의 자의적인 수정·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8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5. 입찰에 참여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을 원본 말고 사본으로 제출하고 나중에 낙찰되면 그때 원본으로 제출하면 안 되나요? 실적증명서 같은 경우 수십 건을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 예규에 따르면 모든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필요 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조달시스템 상 관련 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고 있으므로 발주자가 원본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인도 심사>

Q1. 신인도 평가 중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를 할 때, 지방계약법 상의 지역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 ☞ 입찰 상의 지역제한은 계약법에 따른 것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수리 종합평가(종합심사)는 그와 별도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하는 제도로 가점 적용대상이 된다면 가점을 받게 됩니다.

Q2. 서울에서 영업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장 주소를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확인서' 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 '영업정지 처분확인서' 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 이후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종합문화재수리업인 보수단청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인 조경업의 자격이 모두 필요한 입찰건에서, 보수단청업과 조경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공동수급체 구성)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 ☞ 입찰공고에서 보수단청업과 조경업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인도 심사에서 가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 예규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문화재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한다고 입찰공고에 명기된 경우에는 주된 문화재수리의 업종만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된 문화재수리의 업종이 보수단청업이라면 보수단청업 내에서 구성된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해서만 가점이 인정됩니다.

Q4. 산업재해율확인서는 1년 단위로 산정되는데 입찰 당해연도에 신설된 업체의 경우 산업재해확인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신인도에서 ‘안전관리 심사’ 는 재해율이 업체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경우 그 관리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가점을 주기위해 도입된 항목이므로,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당해연도 신설업체의 경우는 가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에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전문교육 이수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 이전에 입사한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기간도 6개월이라는 기간 산정에 포함되나요?

☞ ‘보유기술자’ 란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이상 근무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후 근무기간만 포함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Q1. 입찰 1등급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계약심의위원회는 무엇이며 그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요?

-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법에 따른 기구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장이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Q2.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 심사위원의 자격은 「문화재위원회 규정」(대통령령)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자격과 동일합니다. 발주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심사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Q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 이미 있는 계약심의위원회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도 할 수 있는지?

- ☞ 계약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전혀 다른 위원회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심사위원회’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입찰건의 특성에 맞는 문화재수리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기타>

Q1. 문화재감리와 실측설계 입찰 시에도 동 예규가 적용되나요?

- ☞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로 발주된 문화재수리에만 적용되며 용역인 문화재감리와 실측설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불상이나 전적 등 동산문화재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물을 수리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가 아닌가요?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을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문화재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물을 보수하는 행위는 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화계사 명부전 보수정비’에서 명부전은 보물 제1822호 서울 화계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을 보호하고 있는 건물로 이를 보수하는 행위는 문화재수리(주변정비)에 해당합니다.

Q3. 동산문화재의 수리도 이번 예규의 적용대상인가요?

- ☞ 이번 예규는 문화재수리 공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산문화재의 수리가 공사로 발주된다면 적용대상이 됩니다.

Q4. 전면 시행 후에도 고시를 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해서만 종합평가를 적용하나요?

☞ 2018년 1월부터 지정문화재수리 추정가격 7억원 이상, 주변정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전면시행 시에는 입찰등급 1·2등급에 대해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Q5.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이 기존 기술자 4명, 기능자 6명에서 기술자 2명, 기능자 3명으로 완화되었는데,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인력을 늘리게 된다면 제도를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재수리업 등록 시 기술자 2명, 기능자 3명의 기술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뿐입니다.
이번 예규는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적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Q6. 낙찰될 경우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현장배치확인표 등은 계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1부 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서류도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나 ‘(업종별)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와 같이 발급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가 아니고, 해당 문화재수리 진행 중 만들어지는 서류인 현장배치확인표,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등은 원본 대조필한 사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7. 신설업체 판단기준에 있어서 등록한지는 3년이 넘었어도 실제 공사 실적이 없이 5년에 이른 경우 3년 미만의 신설업체로 볼 수 없나요?

☞ 신설업체의 판단기준은 문화재수리업 등록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는 신설업체로 볼 수 없습니다.

2.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관련 FAQ

Q1. 원가계산기준은 개인이나 사찰소유의 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나요?

☞ 원가계산기준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발주할 때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문화재 원가계산기준이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이므로 이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제비율에서 일반관리비는 6%인데 이번에 상향조정할 수는 없나요?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일반관리비 상한율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없이는 상향조정이 불가합니다.

Q3. 수리보고서 작성비에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인건비는 반영해주지 않나요?

☞ 간접노무비에 해당 문화재수리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리보고서 작성비에 별도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시행 2019.05.01.] [문화재청 예규 제204호, 2019.03.29, 일부개정]

[시행 2017.07.10.] [문화재청 예규 제180호, 2017.07.05, 일부개정]

[제정 2016.09.19.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4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 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

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 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1]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 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위 5인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

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부대 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이상인 경우

2)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며,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심사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

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추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와 공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문화재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추천으로 선정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인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 해촉은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위원의 심사기피) 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위원 유의사항과 제1항의 내용을 공지하기 위해 [별표 11]의 심사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재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5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7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8조(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9]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2016.09.1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문화재수리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청 예규 제180호, 2017.07.0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문화재수리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청 예규 제204호, 2019.03.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9. 5. 1.] [행정안전부 예규 제67호, 2019. 4.25.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 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1]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를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

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부대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추첨
-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문화재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

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5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9]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7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16.09.2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4. (시범사업의 특례) 부칙 “2” 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적용일 이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의 사전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7. 7. 7.)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4. (시범사업의 특례) 부칙 “2” 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적용일 이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의 사전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9. 4. 25.)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기준)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I.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II.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2개 이하의 공종			하		
III.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p>*. '주변정비' 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p> <p>***.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 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뜰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홑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㉔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홑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㉔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심사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

1. 지정문화재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2. 주변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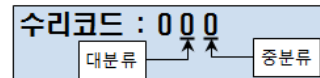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가. 동일 문화재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 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라.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별표 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3-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문화재수리계획 (20점)	문화재수리계획능력	문화재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 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 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 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text{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 / \text{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times 100$$

- 다.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 수리와 동등 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 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 \sum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문화재수리현장배치기간}}{\text{해당문화재수리기간}}$$

* 보정계수 : 해당문화재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 문화재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라.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실적별로 각각 제출)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

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문화재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4)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

접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 찰공고일 당 시 6개월 이 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 찰공고일 당 시 6개월 이 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8.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예)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8점(= 2.0×10 + 1.0×8.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36점(=2.0×8 + 1.5×8 + 1.0×8)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 기간	5.0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문화재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 주 :

1)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문화재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문화재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재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 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 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3)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영업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 주 :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3)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 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주 :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text{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times 100$$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text{ 재해율 가중평균} = [\text{최근년도 재해율} \times 0.5 + \text{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times 0.3 + \text{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 \times 0.2]$$

단, 최근년도 1년전 재해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 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5)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건설업의 재해율을 제시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7) '최근 3년간' 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000대 건설업체 평균 환산재해율' 이 발표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주 :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문화재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전문교육 이행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전문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전문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주 :

- 1)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최근5년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text{입찰자 소속 보유기술자 수}} \times 100$
- 2) 전문교육 이행실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나)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전문교육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말한다.

* 교육수료증이란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말한다.

-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4)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 5) ‘보유기술자’란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 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문화재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 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 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 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기준 =

$$\frac{\text{해당 투찰금액}}{\text{제9조제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 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20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별표 9]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 (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 주 :

가.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문화재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 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괄	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다.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제 사본 각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마.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 기관	비 고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 기관	
수리업경 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8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 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9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전문교육 이행실태	11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경영상태	12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문화재수 리 계획	13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별표 11]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 유의사항
0 심사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0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0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0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심사점수로 합니다.
0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0 심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0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0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잘못된 부분은 심사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0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0 심사 종료 후 본인의 심사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 공지사항
0 오늘 참석하신 심사위원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번 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0 위 내용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

1. 대상 문화재수리

공고번호	000000000-00	입찰일시	0000-00-00
문화재수리명	0000 보수정비		

2. 종합점수(입찰가격, 문화재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	
	영업정지 처분	/	
	안전관리	/	
	공동수급체 구성	/	
	전문교육 이행실태	/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	
결격사유	이행위험	/	
합 계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I (대표자)	구성원 II	구성원 III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대 표 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용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문화재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성자	김입찰	박입찰	

4. 기타(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수리건수	25건	10건		
	수리금액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천원	천원
평가기준		$\frac{\text{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text{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times 100$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배치 기술자 능력

구분		연번	문화재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문화 재 수 리 와 동등이상인 문 화 재 수 리 를 수 행 한 실적	보수 제000호 홍길동 2015.00.00	1	○○○ 보수	1141	000,000	00	0	
		2	○○○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 름 임사일	1						
		2						
		3						
		4						
		5						
		6						
평가기준		$\sum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text{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문화재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2) 보유 기능자 능력

구 분		연 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문화재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평가점수	1. 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 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Σ 평가점수 \times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 번	문화재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 한 지역에서 동등 이상 문화재 수리 실적	1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최근년도			
	최근년도 1년전			
	최근년도 2년전			
입찰자 재해율 가중평균(A)				
건설업 재해율 가중평균(B)				
평가기준 = A / 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산업재해율 확인서 각 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5) 전문교육 이행실태

구 분		연 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전문교육 이수일
입찰공고 일 당시 6개월 이 상 근무 한 입찰 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 간 전문 교육 이 수 여부	구성원 I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20
		2	홍이동	보수	135	해당없음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점수					점
	구성원 II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2.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I	구성원 II	구성원 III
자기자본비율	입찰자 평균자기자본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유동비율	입찰자 평균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Σ 평가점수	Σ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앞 쪽)

I. 일반적인 사항				수리 코드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문화재수리 기준작성)	계약일자		수리금액 (준공금액)	천원	
	착공일자				
	준공일자		수리기간 (일)	일	
수리 구분	지정번호	<i>보물 제1호</i>	문화재명	<i>서울 흥인지문</i>	
	지정문화재 수리[], 주변정비[]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해당란에 ○표				

II.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I (대표)	구 성 원 II	구 성 원 III
회 사 명			
대 표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공동도급 규모 및 내용			
수리금액	천원	천원	천원

III. 배치 기술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I	기 술 자 II	기 술 자 III
배치 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 치 기 간			
배 치 일 수	일	일	일

(뒷 쪽)

IV.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구 분	하도급자 I	하도급자 II	하도급자 III
회 사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V. 붙 임

-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속 업체명):

대 표 자 명 (또는 신청 기술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경유
 감독관(감독부서): (인)
 발급자명 :
 연락처 :

※ 주 :

- 1) 수리코드는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함(1별표 2 참조)
- 2) 수리구분
 가.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나.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4)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여부 있어야 함.
- 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용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 7)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 8) 실적에 관련된 문화재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비 고
문화재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할제 심사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5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5년간" 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8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

□ 문화재수리명 :

□ 업체명 :

□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1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법 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5.0	4.5	4.0	3.5	3.0	
2	수리방법의 적정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3	전통기법의 발굴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4.0	3.6	3.2	2.8	2.4	
4	현장관리 의 적정성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5	현장공개 계획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0	
합 계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

입찰자 :

평가점수

평가부문	심사위원				비고
	A	B	C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 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 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찰자		대표자		소재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임 : 문화재수리 계획서 1식

문화재수리 계획서(예시)

1. 문화재수리 개요
 - 1.1 문화재수리명
 - 1.2 사업개요
 - 1.2.1 사업목적
 - 1.2.2 사업내용
 - 1.2.3 사업위치
 - 1.3 공종
 - 1.3.1 문화재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 1.3.2 문화재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 2.1
 - 2.1.1
 - 2.1.2
 - 2.2
 -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1
 - 3.1.1
 - 3.1.2
 - 3.2
 -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 4.1
 - 4.1.1
 - 4.1.2
 - 4.2
 -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1
 - 5.1.1
 - 5.1.2
 - 5.2
 -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 6.1
 - 6.2
7. 기타

<문화재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문화재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문화재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 가) / (1) /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문화재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m²

-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문화재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가. 제출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 나.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다. 문화재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시 1.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문화재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2
9
7
m
m

∨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보수정비
문화재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2
9
7
m
m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m²]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시행 2019. 2. 1.] [제정 2018. 12. 13. 문화재청 예규 제19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 공사의 원가계산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문화재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의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리보고서”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전반을 기록화한 문화재수리 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원가계산 비목 및 가격결정의 원칙) ① 공사로 발주된 문화재수리의 원가(이하 “문화재수리원가”라 한다)는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1.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2.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3.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④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가격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재수리원가) 문화재수리원가라 함은 문화재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7조(작성방법) ① 문화재수리원가 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의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원형보존 및 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해당 분야의 문화재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에 따른 수당(이하 ‘자문수당’이라 한다)은 [별표 1]의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

른 문화재위원회(동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재료비) 재료비는 문화재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라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해당 문화재수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투사지·모조지·훈증제·피복용 시트·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먹·정 등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가설비계·수리용덧집 등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문화재수리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9조(노무비) 노무비는 문화재수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참여하는 노무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문화재수리 공정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별표 2]의 문화재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경비) ① 경비는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문화재수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수리보고서 작성비는 수리보고서를 작성 및 발간하기 위한 비용(재료비를 포함하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실측조사비(학술적 고증·연구를 위한 조사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리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협조를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과학적분석비는 목서 분석, 적외선 촬영, 안료 및 접착제 성분 분석, 연륜연대 측정, 수종분석 등 계약목적물의 원형 및 구재(舊材)의 상태 등을 분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는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해 해당 문화재 또는 내부 유물을 이전·보관·재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5. 영상촬영비(제작비를 포함한다)는 문화재수리 과정의 기록보존 등을 위해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6. 현장공개비는 문화재수리의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된 것을 제외한다.

7. 전력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8.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9. 기계경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0.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11. 기술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12. 연구개발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13. 품질관리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가설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치목장, 가설창고, 임시유물보관소(유물 등의 임시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수리안내판, 화장실 등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지급임차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6.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의 비용 및 정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을 준용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손해보험료는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반영한다.
17. 보관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8.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0. 폐기물처리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1. 지급수수료는 해당 문화재수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문화재수리로 인해 수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관급자재 관리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기타경비는 경비 중 품셈 및 법령에 의하여 산출이 불가능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하며, 그 비용은 [별표 3]의 문화재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

에 따라 산정한다.

가. 수도광열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나. 복리후생비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참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보통인부·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여비·교통비·통신비는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마. 세금과 공과금은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해당 문화재수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바.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 구입비, 각종 인쇄비 등을 말하며, 수리보고서 작성비 및 실측조사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그 밖의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1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문화재수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별표 4]의 문화재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이윤) ①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문화재수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②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말한다.

제13조(손해보험료) ① 손해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문화재수리의 총문화재수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②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문화재수리 부분의 총문화재수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료를 반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율은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1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4조의 비목별 가격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재수리의 원가계산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제정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라 제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타분야(건축, 토목, 조경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해당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문화재청 예규 제198호, 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입찰공고를 한 분에 대하여는 이 예규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문화재수리원가계산서

문화재수리명 : 서울 흥인지문 문루 여장 보수공사

수리기간 : 2017.02.01.~2017.05.31.

해당문화재 :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비목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문화재수리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수리보고서 작성비 실측조사비 과학적분석비 문화재(유물)운송비 및 보험료 현장공개비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지급수수료 보상비 관급자재관리비 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문화재수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 문화재수리부분의 총문화재수리원가)×()%]				
		자분수당				

[별표 2]

문화재수리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 (2)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해당 문화재수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 (4) 노무량은 문화재수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수리규모*	수리기간	간접노무비율 (%)
5천만원 미만	6개월 이하(183일)	13.1
	7~12개월(365일)	12.6
	13~36개월(1095일)	11.6
	36개월 초과(1096일)	10.8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6개월 이하(183일)	11.9
	7~12개월(365일)	11.4
	13~36개월(1095일)	10.4
	36개월 초과(1096일)	9.6
1억 이상 5억 미만	6개월 이하(183일)	11.6
	7~12개월(365일)	11.1
	13~36개월(1095일)	10.1
	36개월 초과(1096일)	9.3
5억 이상	6개월 이하(183일)	11.4
	7~12개월(365일)	10.9
	13~36개월(1095일)	9.9
	36개월 초과(1096일)	9.1

* 수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별표 3]

문화재수리 기타경비 계산방법

1.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합에 기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기타경비}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times \text{기타경비율}$$

2. 기타경비율

수리 규모*	기타경비율(%)
5천만 원 미만	8.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7.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7
5억 원 이상	6.2

* 수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별표 4]

문화재수리 일반관리비 계산방법

1. 계상기준

계약목적물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일반관리비} = (\text{재료비} + \text{노무비} + \text{경비}) \times \text{일반관리비율}$$

2. 일반관리비율

수리 규모*	일반관리비율(%)
5천만 원 미만	6.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 수리규모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2019. 2. 28 . 조달청 훈령 제 186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원회”란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심사기준”이란 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말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전문분야”란 한국건축사(史), 건축계획, 건축구조, 고고학(考古學), 단청·벽화, 보존과학, 조경학 분야를 말한다(이하 “전문분야”라 한다).
4. “시설업무심의회”란 조달청 「시설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

제2장 심사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 등

제3조(심사위원회 임무) 심사위원회는 입찰자가 [별지 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심사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건축설비과장은 [별표 1]의 ‘문화재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를 기준으로 해당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숫자는 7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고 심사에 참여한다.

③ 간사는 건축설비과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같은 과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해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위촉 및 해촉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평가위원 선정교섭 시스템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심사위원 명단 확정) ①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청장이 추천한 문화재위원 또는 문화재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 건축설비과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사위원 후보자 명부를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시설업무심의회에서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명단을 확정하며, 그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건축사(史)분야 심사위원: 9인 이내

나. 건축계획분야 심사위원: 9인 이내

다. 건축구조분야 심사위원: 6인 이내

라. 고고학(考古學)분야 심사위원: 4인 이내

마. 단청·벽화분야 심사위원: 4인 이내

바. 보존과학분야 심사위원: 6인 이내

사. 조경학분야 심사위원: 9인 이내

③ 건축설비과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명단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 ① 심사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건축설비과장은 해촉 등으로 심사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당초 문화재청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시설업무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회의 운영 등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척 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이 소속한 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의 ‘배우자’ 또는 심사위원의 ‘4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심사대상 문화재수리분야에 직접(공동도급 포함) 참여하였거나, 문화재수리분야에 하도급으로 참여 또는 참여하기로 약속한 경우
3. 심사위원이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심사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심사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려야 하며,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 회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안건의 심사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 건축설비과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심사 이후에 발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간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회의 위원에서 제외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해촉 등) 시설업무심의회는 심사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시 자격요건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심사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심사위원 섭외에 불응한 경우
5. 기타 특정 심사업체에게 편중하여 심사를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건축설비과장이 판단할 경우

제9조 (심사위원 사전접촉 심사대상자에 대한 감점) ① 심사위원은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또는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과 사전 접촉(이 경우 ‘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대면접촉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축설비과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경우, 평가점수 산정 전에 심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를 받아 해당 심사대상자의 문화재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 감점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사전접촉사실을 신고한 심사위원도 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가 감점에 찬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이는 당해 심사 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감점 사항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재수리 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 계획서 제출방법·기한, 심사방법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입찰자는 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5호의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문화재수리 계획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변경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의 선정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한다.

- ② 건축설비과장은 선정된 위원명단을 심사개시 30분 전 평가위원선정교섭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건축설비과장은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 자료의 사전배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을 심사 10일전까지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안전 보안유지 및 보안서약서 징구)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 계획 심사 전에 심사안전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심사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e-메일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3조(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고지)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에 필요한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을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전에 심사위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 자료 배부) ① 건축설비과장은 심사기준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문화재수리계획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심사에 필요한 심사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자가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
 - ② 건축설비과장은 제1항 각호의 심사 자료를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다.
 - ③ 건축설비과장은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심사 자료를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심사 4일전 까지 해당 심사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수요기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 계획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심사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제16조(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 산정) ① 심사위원은 [별표2]의 문화재수리 계획 세부심사방법에 따른 심사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사유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에 의거 심사점수를 부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에 따라 심사대상자별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다.

③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점수를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제9조의 사전접촉 및 [별표2]의 ‘주’에 의한 문화재수리계획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감점 처리하고 문화재수리 계획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⑤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를 시설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점수산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기준 제15조 각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고, 심사기준 제16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8조(심사결과 공개) 건축설비과장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 집계표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19조(이의 신청) 심사대상자는 제18조에 따라 공개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기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문화재수리계획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제4장 기 타

제20조(심사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등) ① 건축설비과장은 심사완료 후 심사위원 수당 등 심사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수요기관은 심사위원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여비는 수요기관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건설부문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별도 여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④ 건축설비과장은 심사의 난이도, 해당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심사대상업체 수, 심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심사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68호, 2017. 2.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0호, 2019. 2. 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문화재수리공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구성표

(단위 명)

문화재의 분류	전문분야	건축사 (史)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고고학	단청 벽화	보존 과학	조경	합계
1	건조물	2~3	2~3	1~2		(1)			7인 이상
2	건조물+보존과 학	2-3	2~3	0~1		(1)	1~3		7인 이상
3	건조물+조경	2~3	2~3	0~1		(1)		1~3	7인 이상
4	성곽·유적	2~3	2~3		1~2				7인 이상
5	성곽·유적+조경	1~2	1~2		1~2			1~2	7인 이상
6	조경							7	7인 이상
7	보존처리						7		7인 이상

※ 주 :

- 1) 문화재의 분류는 심사기준 [별표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다.
- 2) 해당 문화재수리공사의 중요도, 난이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문분야별 심사위원 수와 합계 인원의 조정이 가능함.
- 3) 단청벽화의 전문분야 심사위원은 심사대상공사의 단청벽화 공사 유무에 따라 구성여부를 결정한다.

[별표2]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 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 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 주 :

1)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장(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문화재청장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심사대상공사의 개찰일이 문화재청장이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2) 감점대상은 문화재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문화재 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재수리명			
입찰자		대표자	소재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수리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문화재수리명 1.2 사업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1 문화재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문화재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1 2.1.2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1 3.1.2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 <ol style="list-style-type: none">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 <ol style="list-style-type: none"> 5.1.1 5.1.2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6.1 6.2 7. 기타 			

[별지 제2호 서식]

심사위원 회피사유서

심사 건명 :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 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사위원 전문분야 :
- 소 속 :
- 회피 해당근거 :
- 회피사유 해당업체 :

* 회피사유 해당업체는 심사대상 회사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예시: 아들 심사대상 00업체 근무, 사외이사 등 기타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 ”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p>※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로부터 사전접촉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01 . . .

심사위원 또는 신고자 소속:

성명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감점사항 적합여부서

- 사업명:
- 발주처:
- 입찰자:

심의의견

감점 적합 여부	감점 적합 사유

201

심사위원: (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평가 사유서

- 문화재수리명:
- 전 문 분 야:
- 대 상 입 찰 자:

검토항목		기술검토내용
1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 가능성
2	수리방법의 적정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3	전통기법의 발굴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현장관리의 적정성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	현장공개 계획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심사위원은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검토내용을 기술하고, 업체 간 공정성을 유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계획 평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

문화재수리명 :

업체명 :

심사위원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점수
			수	우	미	양	가	
1 수리대상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5.0	4.5	4.0	3.5	3.0	
2 수리방법 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3 전통기법 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4.0	3.6	3.2	2.8	2.4	
4 현장관리 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5 현장공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2	
합 계								



발행일 2019. 6. 13

발행처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ISBN 978-89-299-1566-7 93600

총괄 고기석

제작 김영범, 신미정
(전화 042-481-4868, 팩스 042-481-4879)

본 자료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PDF파일로 제공합니다.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